

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업”을 “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5호다목 중 “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”을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 및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병원

바. 「초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·공립 학교

제7조제1항제3호는 삭제 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는 제7호로 이동하며,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고효율 기기(냉난방장치, 보일러, LED조명 중 1건 이상) 설치 공사”

4. “폐열(廢熱)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”

5. 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

6.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

가. 태양광

나. 태양열

다. 지열

라. 풍력 등

7.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

제7조제2항제1호 중 가목의 “조닝제어장치”를 “조닝(zoning)별 제어장치”로 하고, 다목의 “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 장치”와 라목의 “스마트계량기 등”은 삭제한다.

1. 에너지 관리 장치

가. 조닝(zoning)별 제어장치

나. 대기전력 차단 장치

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피크부하”를 “최대부하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빙축열”을 “빙축열(氷蓄熱)시스템”으로 하며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최대부하 저감 장치

가. 에너지 저장 시스템(ESS)

나. 빙축열(氷蓄熱)시스템 등

3. 차열도료(遮熱塗料) 또는 일사(日射) 조절장치

4. 스마트에어샤워 또는 순간온수기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성능개선비율에 따라 이차지원율을 적용한다”를 “성능개선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등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에너지성능 개선에 따른 적용 이차지원율과”를 “이차지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와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

4. 그 밖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

제11조제3항제2호에 “고효율 냉난방장치”를 추가하고, “일사조절장치”를 일사(日射)조절장치”로 변경한다.

제16조 중 “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07월 0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